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문의: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(2110-4493), 이동섭 사무관(2110-4496)

개정 정부조달협정(GPA) 설명회 개최

- 개정 GPA 주요 내용, 미국 조달 시장 진출 방안 등 소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달청, 무역협회와 함께 '13.11.27(수) 서울 삼성동 COEX에서 '개정 정부조달협정(GPA) 설명회'를 개최할 예정임.

○ 개정 GPA가 2014년 1/4분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해외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소개하고 협정 활용 제고 방안 모색

□ 또한,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방안이 소개될 예정이며, 특히 업계의 관심이 높은 중국 등의 GPA 가입 관련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.

붙임 : 1. 개정 GPA 설명회 개최 계획
2. 개정 GPA 개요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이동섭 사무관(☎ 2110-44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『개정 GPA 설명회』 개최 개획

1 추진배경

❑ 2014년 1/4분기중 개정 GPA의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동 협정 주요 내용 소개 등을 통한 협정 활용 제고 방안 모색

○ 중국의 GPA 가입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도모

2 주요내용

❑ 일시 및 장소 : '13. 11. 27.(수), 서울 삼성동 COEX 201호

❑ 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, 조달청, 무역협회

❑ 참석 : 관련 업계 종사자, 관계부처 담당관 등

❑ 주요내용

시간	내용
09:30~09:45	■ 개회식
09:45~10:15	■ WTO GPA 특징 및 국내외 정부조달 정보제공처 소개
10:15~10:45	■ 개정 GPA 주요내용, 중국 등 GPA 가입 협상 동향
10:45~11:15	■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방안
11:15~11:30	■ coffee break
11:30~12:30	■ 설명회 논평 및 Q&A
12:30~14:00	■ 오찬

붙임2 개정 GPA 주요내용

1 개정경위

□ 현행 GPA 제24조 제7항(b)는 발효* 후 3년 이내에 협정문 개선 및 양허범위 확대를 위한 협상 개시를 규정

* 1996.1.1. 발효 (우리나라는 1997.1.1. 발효)

o 1997년 협정문 개정논의 개시, 2004.7월 양허 확대협상 본격 진행

□ 2011.12.15. GPA 개정협상 타결

□ 2012.3.30.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 (GPA/W/316)

□ 현행 GPA 회원국의 2/3*가 개정 의정서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

* 현행 GPA 회원국은 43개국이나, EU 및 EU의 28개 회원국은 EU가 대표하므로 2/3는 10개국(=EU+9개국)

o 상기 발효일 이후에 수락서를 기탁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발효

o 개정 GPA 발효국과 현행 GPA 발효국 간에는 후자 적용

2 주요내용

구 분	현행 GPA	개정 GPA
정의	(없음)	**제1조** 신설
적용범위	**제1조**	**제2조** 현행 GPA 개별 회원국 부속서에서 협정 적용대상 외로 별도 명시하던 특정목적 조달(개발원조, 주둔군 등)을 제2조 제3항에 규정
일반원칙	**제3조** 내국민대우/비차별 **제4조** 원산지 **제16조** 대응구매	**제4조** ① 내국민대우/비차별, 원산지, 대응구매를 통합 규정 ② 전자조달시 일반적으로 가용한 IT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장 규정(제4.3조) 신설 ③ 투명성·공정성 규정(제4.4조) 신설
개도국 특별대우	**제5조** 개도국은 협정 예외를 타 회원국과 협상 가능하며, 위원회에 예외 신청 가능	**제5조** 과도조치(가격특혜, 대응구매, 양허 기관 및 분야의 단계적 추가 등) 규정 신설
참가조건	**제8조** 재정·상업·기술능력 등 입찰 참가조건의 국내외 공급자간 비차별 적용	**제8조** 과거 수주실적의 입찰 참가조건화 금지 규정 신설(제8조 제2항(a))
기술규격	**제6조** ① 도안·특징보다 성능 위주로 규정 ② 국제표준 우선 이용	**제10조** 자원보전 및 환경보호를 고려한 기술규격 신규 인정(제10조 제6항)
전자조달	(없음)	**제6조** 법령, 조달공고 등의 전자적 공표 가능 **제14조** 전자경매시 제공정보 요건
이의제기	**제20조**	**제18조** 국내법상 공급자가 협정 위반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경우, 해당 당사국의 협정 이행조치에 대한 공급자의 불합치 여부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의무화(제18조 제1항(b))
양허의 수정	**제24조** (최종조항의 일부)	**제19조** ① 별도 조항 신설 ② 위원회가 양허 수정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절차, 민영화 기준, 보상기준 채택 규정
분쟁해결	**제22조**	**제20조** 조달분야 유자격자의 패널 포함 의무 삭제
최종조항	**제24조**	**제22조** 현행 GPA상의 공개조달을 왜곡하는 차별적 조치의 도입·유지 회피 노력(seek to) 규정 유지(제22조 제6항)

3 양허 주요 변경 사항

(1) 우리나라

□ Annex 1 기관 7개 신규양허

o 소방방재청, 방위사업청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국가인권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

□ Annex 2 기관 52개 신규양허

o 울산광역시, 51개 기초자치단체 (서울 25개, 부산 16개, 인천 10개)

- 기초자치단체 물품·용역 양허하한선은 광역시 20만 SDR보다 높은 40만 SDR로 설정 (건설은 1,500만 SDR로 동일)

□ Annex 3 기관(도시철도공사)* 7개 신규양허

* 서울메트로,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, 인천메트로, 부산교통공사, 대구도시철도공사,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. 광주도시철도공사

o 도시철도공사를 위한 중소기업 우대조치 예외주석 신설

o 양허 개시시기는 2015.1.1.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개정 GPA 발효일 중 늦은 날

□ BOT 신규양허 (한·미, 한·EU FTA에서 기양허)

□ 급식조달(human feeding program) 예외주석 신설하여, 학교 급식시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에 대한 WTO 규범 위반 논란 종식

(2) 미국

□ Annex 1 기관 12개 신규양허

o 양허기관 Dept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산하기관이나, 미양허였던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신규양허 포함

□ 25만 SDR 이상 규모의 격오지 발전·통신사업에 대한 Rural Utilities Service의 재정지원시 국산품 사용요건 면제

(3) 유럽연합(EU)

□ Catch-all 방식으로 모든 Annex 1 기관 양허

o 단, catch-all 방식 미채택 국가(우리나라 포함)에 대해서는 기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양허기관 제한

- EU 및 27개 회원국 중앙기관 126개 신규양허 (잠정집계)

□ Annex 3 철도조달(일반철도 및 고속철도) 신규양허

o 한-EU간은 일반철도 조달만 상호개방(고속철도 제외)

o 우리나라에 대한 도시교통 조달 배제주석 삭제(한국에 대해 도시교통 조달 신규 개방)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□ BOT 신규양허

(4) 일본

□ Annex 1 기관 물품·용역 조달 양허하한선 인하 (13만 SDR → 10만 SDR)

□ Annex 2 기관 7개 신규양허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□ BOT 신규양허

(5) 캐나다

□ Annex 1 기관 1개, Annex 2 기관 1개(Nunavut주) 및 Annex 3 기관 2개 신규양허

(6) 스위스

□ Catch-all 방식으로 모든 Annex 1 및 Annex 2 기관 양허

o 단, 우리나라의 Annex 2 기관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허주석 유지 (우리나라가 전체 Annex 2 기관을 양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)

□ 우리나라에 대한 도시교통 조달 배제주석 삭제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(7) 노르웨이

□ Catch-all 방식으로 모든 Annex 1 및 Annex 2 기관 양허

□ 우리나라에 대한 도시교통 조달 배제주석 삭제

□ 우리나라에 대한 HS 8504(변압기), 8535(플러그), 8537(배전반), 8544(절연전선) 조달 배제주석 삭제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(8) 아이슬란드

□ Catch-all 방식으로 모든 Annex 1 및 Annex 2 기관 양허

□ Annex 3 철도조달 신규양허

o 한·아이슬란드간은 고속철도를 제외한 일반철도 조달만 상호개방

□ 우리나라에 대한 도시교통 조달 배제주석 삭제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(9) 리히텐슈타인

□ Annex 1 기관 2개 및 Annex 3 우편조달 신규양허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(10) 이스라엘

□ Annex 1 기관 5개 및 Annex 3 기관 9개 신규양허

□ 조달배제 품목 중 HS9028(전기계량기) 삭제, HS 8501(전동기) 범위 축소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□ 개정 GPA 발효후 대응구매(offset) 단계적 축소·철폐

o 발효 6년차 → 9년차 → 11년차 → 16년차 완전 철폐

(11) 대만

□ Annex 2 기관 29개 신규양허

o Kaohsiung County(미양허기관)이 Kaohsiung City(양허기관)으로 흡수된 결과 반영

□ Annex 3 기관 1개 신규양허

(12) 홍콩

□ Annex 1 기관 2개 신규양허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(13) 싱가포르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(14) 아루바

□ 물품·용역 조달 양허하한선 인하 (13만 SDR → 10만 SDR)

□ 건설조달 양허하한선 인하 (500만 SDR → 400만 SDR)

□ 서비스 양허범위 확대

(15) 아르메니아

※ 변동사항 없음.(2011.9.15. 신규가입시 양허 유지)